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와 감사위원회 역할

: 공인회계사법을 중심으로

2024.04.25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위험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비감사업무가
심각한 독립성 훼손 위험이 있을 경우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움

비감사업무와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위험

이기적위협	비감사업무 성공보수 등의 영향을 받는 경우
자기검토위협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 인증을 하는 경우
변호위협	고객의 특정 입장을 옹호해야 하는 경우
유착위협	고객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동정적이 되는 경우
압력위협	압박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려는 비감사업무가
독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지 모니터링 실시

II. 감사대상회사에 제공이 금지되는 외부감사인의 10대 비감사업무

공인회계사법에서 외부감사인에게 금지하는 비감사업무(*)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 대행	경영의사 결정 지원	재무정보 체제 구축 및 운영	보험계리 업무
				
인사(HR) 지원	소송 지원	실사 가치 평가 지원	자금조달 투자 알선 및 중개	기타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
				

금지되는 비감사업무는 감사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그 자회사까지도 동일하게 적용

(*) 공인회계사법 제 21조 (직무제한) 2항

III.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비감사업무 제공 전 점검

공인회계사법 상 금지되는 업무 외의 비감사업무를
외부감사인이 수행하기 전에 감사위원회로부터 구해야 할 법적 요건은?(*)

- 감사위원회와 비감사업무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 이해상충이 높은 비감사업무는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함
→ 의사록, 서면, 이메일과 같은 의사표현 필요

Case1.

감사대상회사에 비감사업무 제공 전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제공 시,
감사대상회사의 감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동의를 필요



Case2.

자회사에 비감사업무 제공 전

감사대상회사의 자회사에 비감사업무를
제공 시, 자회사의 감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동의를 필요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직무제한) 4항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IESBA
국제윤리기준을 중심으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1회

Advanced Auditor Program

신임 감사위원과 감사를 위한 『감사위원회 핸드북』교육 프로그램

- 일시: 2024년 5월 21일(화) 09:50 ~ 15:10 (오찬 제공)
- 장소: 삼성KPMG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 참가 문의: 민경석 책임연구원 (kyeongseokmin@kr.kpmg.com | 02-2112-4292)

※ 본 행사는 모집인원이 한정 되어 있으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교육 신청하기

